

'18년 주택지원사업 공공주택분야 사업계획 제출 안내

□ 목적

- 공공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

□ 관련근거

-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127호 “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” 제4조(시행기관)
-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-5호 “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” 제18조(협약체결)

□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공공주택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제외)
 - *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(영구임대주택, 국민임대주택)
- 지원분야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, 소형풍력
- 지원자격 :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
- 보조금 지원 : '18년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 결정
 - ※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은 설치환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예정 (기준단가 미제시)이며 감리비용은 불포함
-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별 사업계획서 접수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
 - 사업계획서 제출 전 구체적인 사업관련 사전 협의 요망(사업내용, 기간, 예산 등)

□ 사업계획서 작성방법

- 사업계획서 제출은 '18년도 지원대상 및 설비 설치용량 파악 목적이며 사업계획서 양식[별첨1] 참조하여 작성
- 사업계획서 작성 시, '18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단가[별첨2]를 참고로 사업비를 적용하여 최종 사업계획서 접수 예정

□ 제출기한 : '18. 5. 25(금) 까지 공문 제출

- 사업계획서 작성 등 관련 문의 :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31-260-4644

□ 향후계획

- '18년도 주택지원사업 공공주택분야 참여대상 기관 업무 협의 및 사업 계획서 제출·접수(~5/25)
- '18년도 공공주택지원사업 협약체결(사업계획 승인 후)
 - 예산 범위 초과 시, 별도 협의를 거쳐 '19년 예산 확정 시 고려
- 협약기관별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(6월~)

별첨 : 1. '18년 주택지원사업 공공주택분야 사업계획서 1부

2. '18년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기준 1부. 끝.